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78,267,011	14,348,010
일반회계		424,046,017	12,721,381
특별회계		54,220,994	1,626,630
	기타특별회계	54,220,994	1,626,630
	상수도 특별회계	24,476,385	734,292
	수질개선 특별회계	21,889,590	656,68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31,410	12,942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2,128,905	63,86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024,796	30,744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203,228	6,097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91,851	14,756
	주차장 특별회계	3,574,829	107,245

-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 제 4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261,618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000,000천원 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하고 즉시 의회에 보고한다.